

2023년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23.(월)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5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24건(안건번호 제2023-199391호~20231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99391호~199407호(순번 1번~17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99408호~199438호(순번 18번~48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99439호~199457호(순번 49번~67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 번호 제2023-199458호~199460호(순번 68번~70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9461호~199462호(순번 71번~72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 번호 제2023-199463호(순번 73번)는 블로그에서 드라마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물의 이용 및 목적이 사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긴 하나 권리침해가 명백한 점, 저작권자가 국내 공식 공개를 예고하고 있고, 복제전송자는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불법복제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게시 내용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동일한 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199464호~202314호(순번 74번~2661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13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48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 2023-21041호~2152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48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III.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5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별 처리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65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277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 등에서 'EV BOX' 또는 'U B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40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7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7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번 내지 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

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70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8번 내지 48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바로 의결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8번 내지 48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번 내지 6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6건임. PDF 파일은 문

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9번 내지 67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모두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최근 게시물들임.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9번 내지 67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8번 내지 7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 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인 '■■■■■■■■■■.■■■■'의 주소를 제공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를 다시 클릭하면 웹툰 불법복제물을 감상할 수 있는 3단계 시스템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68번 내지 70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해당 해외 불법 사이트들은 구글검색 제한 심의 대상이었던 사이트들인지?
- 김선화 선임: 그러함. 모두 2022년 내지 2023년 중 보호원이 요청하여 심의를 거쳐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임. 심의 대상이었던 URL과 심의일 등은 모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C 위원: 대체 URL을 제공하고 있는 '■■■■■■■■■■.■■■■'도 지난

심의에서 보았던 사이트임.

- 김선화 선임: 그러함.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알림 사이트는 심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알림 사이트로 연결하는 ○○○ 블로그 게시물을 심의 안건으로 부의한 것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외 사이트로 경로를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것에 이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됨. 의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시정권고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8번 내지 70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1번 내지 7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불법복제물 총 2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는 모두 국내 출판사에서 유료로 유통중인 저작물들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71번 내지 72번,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1번 내지 72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 게시물에 국내 공개 예정인 중국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게시하면서 게시자 본인이 작성한 한글 자막을 제공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의 이용 및 목적이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저작권사가 곧 공식 공개 예정임을 공지하고 있는 최신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불법복제하여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블로그나 게시글의 목적 및 내용으로 미루어 향후에도 불법복제물을 게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73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게시물이나 해당 블로그에 광고가 있는지?

- 김선화 선임: 없음.
- C 위원: 수익 목적으로 불만한 사정이 없고, 게시물 소개나 제목을 봐도 팬이 개설한 것으로 보임. 본인의 중국어 번역 능력을 광고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A 위원: 이미 동일 회차가 저작권사에 의해 공개된 상황이므로 시장을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음.
- B 위원: 그렇지만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 D 위원: 동의함. 전체 분량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경고만 하는 것은 심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함.
- C 위원: 팬심으로 개설했다기엔 콘텐츠만 업로드 되어 있고 본인의 감상이나 의견 등 본인이 작성한 콘텐츠가 너무 없음.
- E 위원: 게시글이나 블로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향후에도 불법 복제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은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자는 의견이었음.
- B 위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이 돼야 한다는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73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3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4번 내지 29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5,13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플로라 앤 션'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7번은 영화 '플로라 앤 션'으로, 2023. 9. 22.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 3'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58번은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 3'임. 2023. 9. 20. 개봉하여 현재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OTT에서 1만원에 판매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최악의 악'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89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최악의 악'임. 디즈니플러스에서 독점 서비스중인 드라마의 최신 2개 회차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74번부터 2924번까지 총 5,139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SW,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웹소설,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4번 내지 292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99391호~202314호(순번 1번~2924번)는 만장일치로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

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041호~21521호(순번 1번~481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30.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